

보도 일시	2022.4.1.(금) 조간 2022.3.31.(목) 11:00	배포 일시	2022. 3. 31.(목) 06:00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530)
		담당자	사무관 류충현 (044-200-5540)

4, 5월에 오징어, 고등어 잡으면 안돼요

- 4.1.(금)부터 오징어 금어기, 4.15(금)부터 고등어 금어기 시작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4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살오징어(<i>Todarodes pacificus</i>)	고등어(<i>Scomber japonicus</i>)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살오징어, 고등어,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4월에는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우선, 살오징어는 4월 1일(금)부터 5월 31일(화)까지 두달 간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가을과 겨울에 알을 낳고 봄에 주로 성장하는 살오징어의 특성을 고려해 봄철인 4월과 5월을 금어기로 지정한 것이다. 다만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 어업은 특별히 5월 1일(일)부터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어는 4월 15일(금)부터 5월 15일(일)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다. 고등어의 주 산란기가 4월에서 6월까지이다 보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를 금어기로 정하였고, 수온과 조업방식을 고려해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 어업은 4월 1일(금)부터 4월 30일(토)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설정하였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던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 15cm로 지정하고 그 크기 이하의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이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4월 중에 고등어나 살오징어를 잡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물고기를 잡는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든 분들이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금어기·금지체장



월	1월		3월	4월			5월			
품종	명태	대구	가리비	삼오징어	털게	고등어	코끼리조개	감성돔	삼치	참문어
포획금지기간	1.1~12.31	1.16~2.15	3.1~6.30	4.1~5.31(단,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정지망 4.1~4.30)	4.1~5.31(강원)	4.1~6.30 중 1개월	4.1~7.31(강원, 경북)	5.1~5.31(신설)	5.1~5.31(신설)	5.16~6.30(신설) (사·도지사는 5.1~9.15중 46일 이상을 설정가능)
포획금지체장		35cm		15cm	7cm(강원)	21cm		25cm		

월								6월				
품종	대하	전어	대합	갈태	곰피	말뚝지	주꾸미	낙지	참홍어	꽃게	소라	펄담새우
포획금지기간	5.1~6.30	5.1~7.15(단, 강원, 경북 제외)	5.1~7.31	5.1~7.31(제주 연중)	5.1~7.31	5.1~7.31	5.11~8.31	6.1~6.30 (지자체 별도 고시 가능)	6.1~7.15	6.21~8.20(단, 연평 등 서해5도서 7.1~8.31)	6.1~8.31(전남,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울릉)	6.1~8.31
포획금지체장						18cm			42cm	6.4cm	5cm(제주 7cm)	10cm

일			7월										
품	종	새조개	대게	갈치	참조기	해삼	백합	개서대	달새우	오분자기	키조개	붉은대게	육돔
포획금지기간		6.16~9.30 (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	6.1~11.30	7.1~7.31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	7.1~7.31(단, 유자망 4.22~8.10)	7.1~7.31	7.1~8.20	7.1~8.31	7.1~8.31	7.1~8.31	7.1~8.31	7.10~8.25 (단, 강원연안자망 6.1~7.10)	7.21~8.20
포획금지체장			9cm	18cm(항문장)	15cm		5cm	26cm	5cm	4cm(제주)	18cm(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품 종	돌부기	전복류	넙치	도박류	연어	돔	쥐노래미	갯다시마	우뚝가사리	문치가자미
포획금지기간	8.1~9.30	9.1~10.31(제주 10.1~12.31)	9.1~11.30(제주) (단, 제주도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10.1~익년 4.30	10.1~11.30	10.1~익년 1.31	11.1~12.31	11.1~익년 1.31	11.1~익년 4.30	12.1~익년 1.31
포획금지체장		7cm(제주 10cm)					20cm			20cm (단, 3년간 17cm)

규	제	금 지 체 장																			
품	종	기름가자미	기수채전	갯장어	넙치	농어	도루묵	대문어	돌돔	미거지	민어	방어	불락	봉장어	용가자미	조피불락	참가자미	참돔	청어	할돔	황복
포획금지체장		20cm (단, 3년간 17cm)	1.5cm	40cm	35cm	30cm	11cm	600g	24cm	40cm	33cm	30cm	15cm	35cm	20cm (단, 3년간 17cm)	23cm	20cm(단, 3년간 17cm)	24cm	20cm	15cm	20cm

* 빨간색 : 2021.1.1부터 변경되는 어종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어류

전장, 항문장, 체바폭

갑각류

두흉갑장, 두흉갑장, 외투장

오징어류

외투장

패류

각장, 각고

암컷 포획금지 4종

종종	포획금지기준	종종	포획금지기준
꽃게	복부 외포란 암컷	대게	암 컷
민꽃게	복부 외포란 암컷	붉은대게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제3항)

- ③ 문치자자미,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의 경우 '21.1.~'23.12.31까지는 17cm 이하 적용, '24.1.1부터는 20cm 이하 적용